

# 원자력관련 전략기술의 수출통제 이행방안 연구

윤성호, 신동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shyoon@kinac.re.kr

## 1.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라 유형의 기술이전형태(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등)를 벗어난 무형의 기술이전형태(전화, 이메일, 구두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수출통제 선진국들은 전략기술의 무형이전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 1월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시행하였다[1].

기존의 법령에 따르면 전략기술 이전의 통제는 기술보고서, 설계도면 등과 같이 기술이 종이, 메모리와 같은 기록매체를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과 교육, 훈련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의 경우에도 수출자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략기술인지 여부를 판별하고, 전략기술에 해당할 경우 핵국 여부에 따라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전제로 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2].

무형 이전되는 기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에 의해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유형의 기술이전과 동일한 수출통제 이행 정책을 적용한다면 정부와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활동이 경직되거나 사업자들이 불법수출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수출통제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2. 본론

### 2.1 현행 전략기술 수출통제 제도 분석

전략기술 수출통제 제도는 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기반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중 최상위 법령인 대외무역법이 무형기술이전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도 무형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을 수립하여 명시하였다. 그러나 고시 개정과정에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자율준

수무역거래자 제도를 도입하여 무형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한 반면 원자력전용품목에 관해서는 기술의 특이성으로 인해 개정이 보류되었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을 수출자가 전화, 이메일, 구두나 행위로 이전하는 경우 매번 정부보증 및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 이행을 보류한 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 2.2 전략기술 수출통제 제도 개선안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 민원인들의 수출통제 이행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였다.

개별 신청건에 대한 전략기술 수출허가 절차를 현행 절차와 비교한 도표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현행 절차에서는 무형 기술이전에 대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형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보증을 전제로 수출허가가 발급되고 있다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절차를 추가한 개정안에서는 유형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정부보증 면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무형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허가에 대해 정부보증을 면제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일어나는 무형기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민원신청자에 대해 수출통제 교육 이수 의무화함으로써 수출통제 제도를 확산하고 및 불필요한 신청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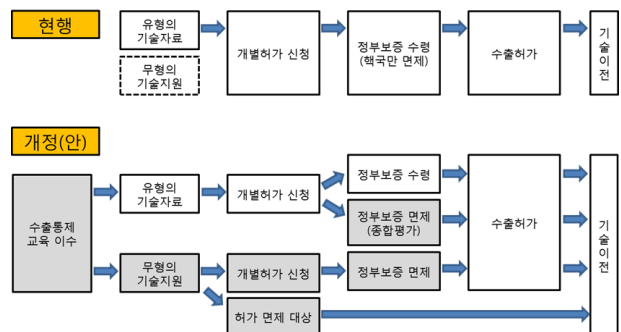


Fig. 1. The Revised Export License Procedure for Strategic Technology(Individual).

포괄 수출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Fig. 2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 신청건에 대해 수입국 정부보증을 의무적으로 수령해야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 정부보증을 종합평가를 통해 유연하게 발급하고 통제 마킹 하에 사후 판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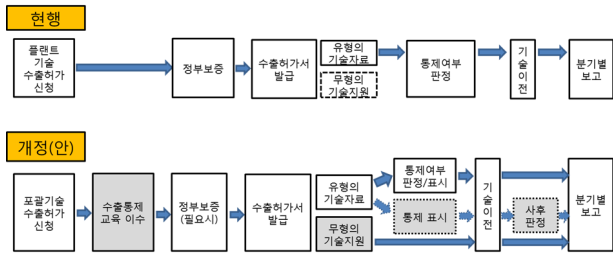


Fig. 2. The Revised Export License Procedure for Strategic Technology(Comprehensive).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부보증은 외교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에는 유형기술이전만 통제하기 때문에 신청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UAE BNPP나 요르단 연구로 사업 등에 대해 포괄정부보증을 수령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지만, 같은 방식으로 무형기술이전을 통제한다면 다수의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정부보증을 수령해야 되므로 수출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Table 1과 같이 국가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한 화이트국 선정으로 정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3].

Table 1. Subject of Exemption for Government Assurance

	정부보증 면제 대상	비고
1	수입국이 핵무기 보유국인 경우	기존
2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한 비화이트국 외국인에게 무형 기술 제공	
3	국내 대학에서 비화이트국 외국인에게 유·무형 기술 제공	
4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화이트국 외국인에게 계약에 필요한 유·무형 기술 제공	
5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비화이트국 외국인에게 계약에 필요한 무형 기술 제공	
6	화이트국 정부,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목적으로 유·무형 기술 제공	
7	화이트국 외국인에게 무형 기술 제공	추가
8	계약없거나 무상으로 비화이트국 외국인에게 무형 기술 제공	
9	양국간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별도의 수출통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10	화이트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간 동등한 수준의 유·무형 기술 제공	
11	수입시 상대 정부에 제공한 보증이 없거나 양국간 협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제공	
12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관련 전략기술의 무형적 이전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국가별평가지표를 활용한 화이트국 선정과 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전략기술 수출통제 제도 개정 필요 사항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던 기술의 무형적 이전이 유형적 기술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정적인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핵확산 우려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를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수출허가 또는 정부보증을 면제하는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통제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였다. 개선안을 도입한다면 수출자들의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전략기술의 무형기술이전에 대한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수출통제 체제가 갖춰지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 4.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원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원자력안전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No. 1403022).

### 5. 참고문헌

- [1]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 [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43호, 2016.
- [3] 윤성호, 이찬서, 서하나, 최선도, 신동훈, "원자력수출통제 이행체제 개선을 위한 국가별 평가 지표 분석 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6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14(1), 427-428, 5.25~27, 2016, 목포.